

제 13 장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박대식* · 권인혜**

- | | |
|---------------------------|--------------------------------|
| 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 4.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 1.1. 다문화가족이란? | 4.1.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현황 |
| 1.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 4.2. 현행 정책의 문제점 |
| 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 | 5. 농어촌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방안 |
| 2.1. 경제적 적응 | 5.1. 기본방향 |
| 2.2. 사회문화적 적응 | 5.2. 정책 개선방안 |
| 2.3. 심리적 적응 | |
| 3.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 |
| 3.1. 다문화가족 관련 경험 | |
| 3.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pds838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inhye@krei.re.kr

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1.1. 다문화가족이란?

- 다문화(multi-culture)는 말 그대로 여러 문화라는 뜻으로 언어, 문화, 관습, 종교, 인종, 계층, 직업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족을 의미한다.
-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과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은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파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 이러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사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국 농어촌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찾아서 그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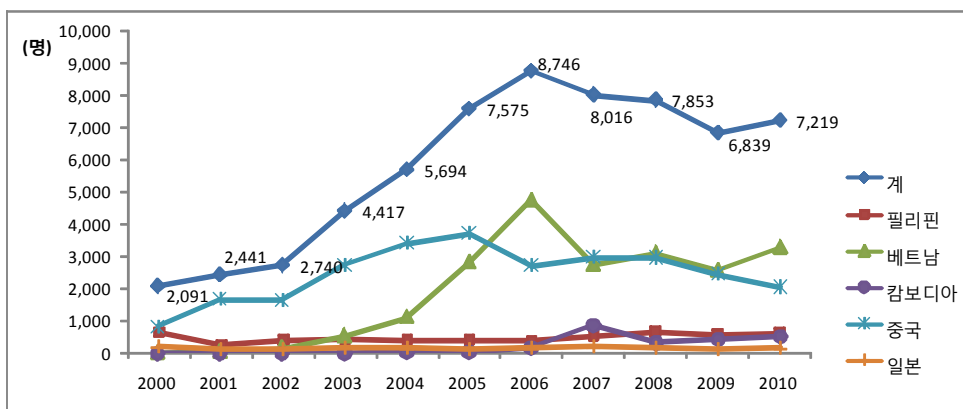
1.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 2000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읍·면) 유입건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6

년에는 8,746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듯했으나 2010년에는 7,219명으로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

- 2005년까지는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유입하였으나, 2006년에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중국의 2배 이상 유입하였다.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그림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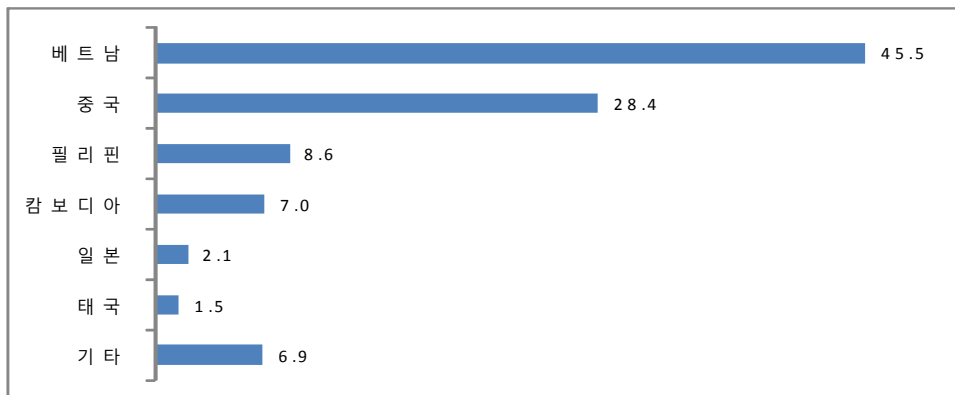
그림 13-1.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 유입 건수 추이(2000~2010)



자료: 통계청, 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그림 13-2.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2010년)

N=7,219



주: 기타에는 태국,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 2010년에 농어촌(읍·면)에 유입한 여성결혼이민자(7,219명)의 국적은 베트남(45.5%), 중국(28.4%), 필리핀(8.6%), 캄보디아(7.0%) 순이었다<그림 13-2>.
- 농림어업 종사 남자의 혼인건수 중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2000년 38.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무려 42.5%를 차지하였다.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33.9%로 나타났다.

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34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0가구(여성결혼이민자 400명, 한국인 남편 400명, 시부모 100명)를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1,920명의 현지통신원 중에서 응답을 완료한 8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원래 ‘적응(adaptation)’이란 생태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적응의 개념을 확장하여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양상이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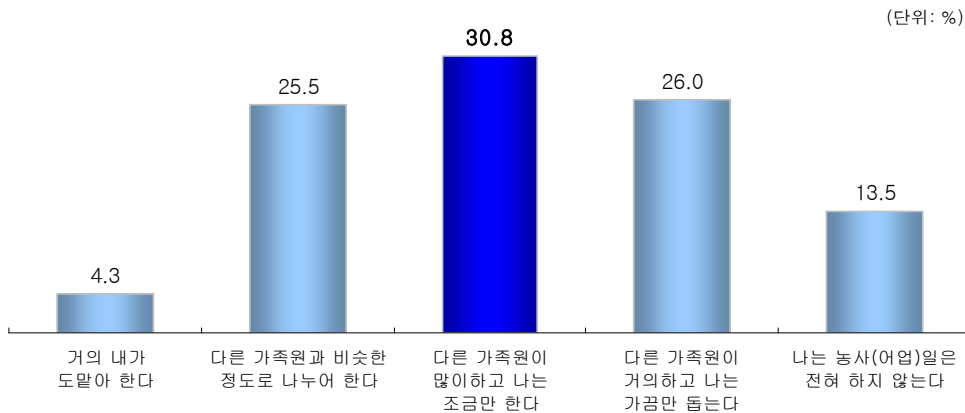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경제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1. 경제적 적응

2.1.1. 경제활동

- 여성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었다<그림 13-3>.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업 참여 정도는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높아졌으며, 농사(어업)일은 집안일이 많아 부담스럽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었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15.3%, 남편의 27.5%가 농어업 이외의 소득활동(직장일)을 하고 있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농어업 이외의 소득활동 참여 의사는 37.8%이었다.

그림 13-3.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업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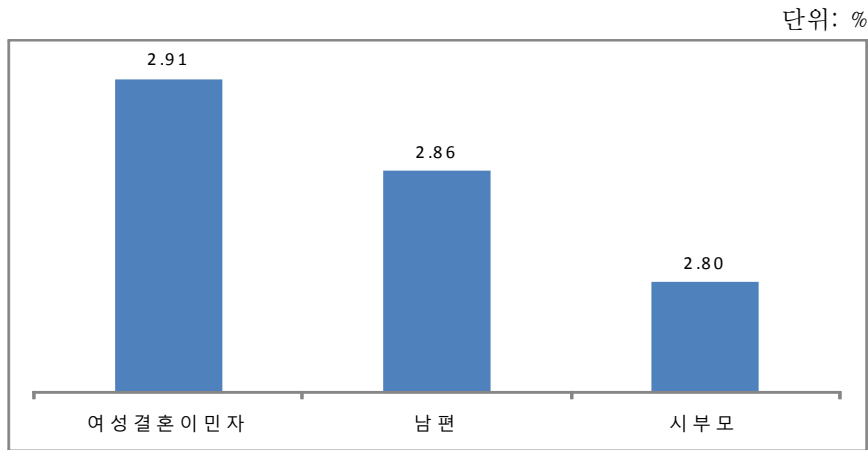
2.1.2. 가구소득 및 경제적 만족도

- 다문화가족의 연간 가구소득 분포는 ‘1,000만 원 미만’이 9.3%, ‘1,000~2,000만 원 미만’이 45.5%, ‘2,000~3,000만 원 미만’이 35.5%, ‘3,000만 원 이상’이 9.7%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만족도’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적 만족도는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 경제적 만족도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2.91, 남편 2.86, 시부모 2.80이었다(그림 13-4).

그림 13-4. 경제적 만족도 평균점수 비교



< : () >

-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안정적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림촌(다문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림촌(多林寸)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서로 다른 개개인이 어울려 작은 마을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문화음식점 다림촌은 다문화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추진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사업이다.
- 다림촌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5월에 횡성군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다림촌 건물을 매입하였다. 2010년 6월에 금융감독원지정기탁·서울시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다문화음식점 시설설비 및 취창업전문교육, 음식조리교육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010년 9월에는 여성결혼이민자 5명이 시범적으로 다림촌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증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2011년 5월에는 다림촌 정식 개소식을 가졌다.

- 다림촌의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 베트남 음식으로는 쇠고기 쌀국수 포(pho)와 월남쌈 고이꾸온(Goi cuon)이 있고, 태국 음식으로는 파인애플 볶음밥 카오팻 사파로드(Khao phat sapparod), 볶음면 팟타이(phad thai), 새우 볶음밥 카오팻 궁(Khao phat gung)이 있다. 일본 음식으로는 버섯 샤브샤브와 메밀국수 소바(soba)가 있고, 캄보디아 음식으로는 춘권 룡티오(spring roll)가 있으며, 중국 음식으로는 어항육사(어항이란 소스에 돼지고기와 야채를 썰어 넣어 볶아서 만든 요리)가 있다. 그리고 한국 음식으로는 손맛 칼국수, 손맛 만두국, 비빔밥이 있다. 칼국수와 만두는 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



2.2. 사회문화적 적응

2.2.1. 가족관계

-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중에서 힘든 관계인 사람이 있는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고, 남편(11.0%), 시어머니(8.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72.3%였다.
- 지난 1년간 가족들로부터의 각종 폭력을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6.0%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유형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6.8%),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5.8%), ‘거칠거나 모욕적인 말을 함’(4.8%), ‘생활비나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음’(3.8%) 등이었다.
-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주체를 알아보면, ‘생활비 지출 및 관리’와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52.3%와 51.5%로 가장 높았다.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본인의 사회·문화활동'(52.0%),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50.5%), '친정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49.0%), '본인의 취업 및 이직'(48.0%), '시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46.8%), '본인의 교육'(44.8%) 등이었다<표 13-1>.

표 13-1.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주체(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N=400; 단위: %

	4.0	8.0	31.0	52.3	4.8	100.0
	3.3	6.3	31.5	51.5	7.5	100.0
	3.8	11.0	50.5	28.5	6.3	100.0
	6.0	14.8	48.0	27.5	3.8	100.0
	8.0	19.8	44.8	24.8	2.8	100.0
	7.0	13.5	52.0	24.3	3.3	100.0
	1.8	4.8	49.0	40.0	4.5	100.0
	1.5	3.5	46.8	43.3	5.0	100.0

2.2.2. 사회적 지지

-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동일 국적인 수는 평균 3명이고, 한국인 수는 평균 1.4명이며, 제3국인 수는 평균 0.5명이었다.
-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친구나 이웃에 의해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담당자와 같은 공공의 사회적 지지는 아주 부족하고, 종교단체와 자원봉사자에 의한 사회적 지지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2>.

표 13-2. 사회적 지지(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복수응답 가능)

N=4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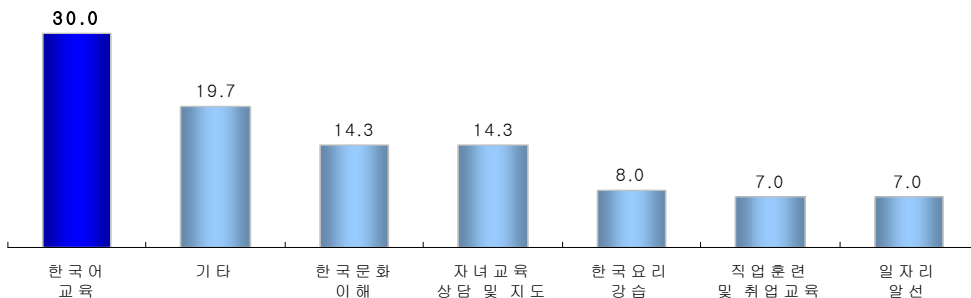
	2.5	71.5	8.0	0.3	26.8
	1.5	72.8	4.3	0.3	24.3
	3.3	76.3	14.8	0.8	16.0
) (,	2.3	84.3	8.5	0.8	9.8
	2.8	68.8	27.8	0.8	12.0
) (, ,	1.5	84.3	8.8	0.8	11.0
	2.0	78.5	21.0	1.0	8.5
	8.5	44.8	16.3	1.5	35.5
	6.3	60.5	41.0	1.8	10.3
	5.3	72.8	25.0	1.0	9.5
	4.3	76.8	26.5	0.5	8.0
	3.5	74.8	27.8	1.5	8.8
	3.0	63.7	44.0	2.3	7.2

2.2.3. 사회복지서비스 요구

-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1순위,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30.0%), 한국문화 이해(14.3%),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4.3%) 등이었다(그림 13-5).

그림 13-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요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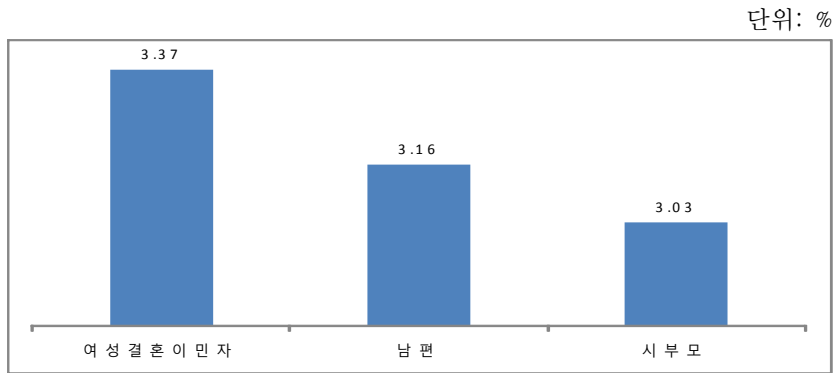


2.2.4. 문화적응

□ 문화적응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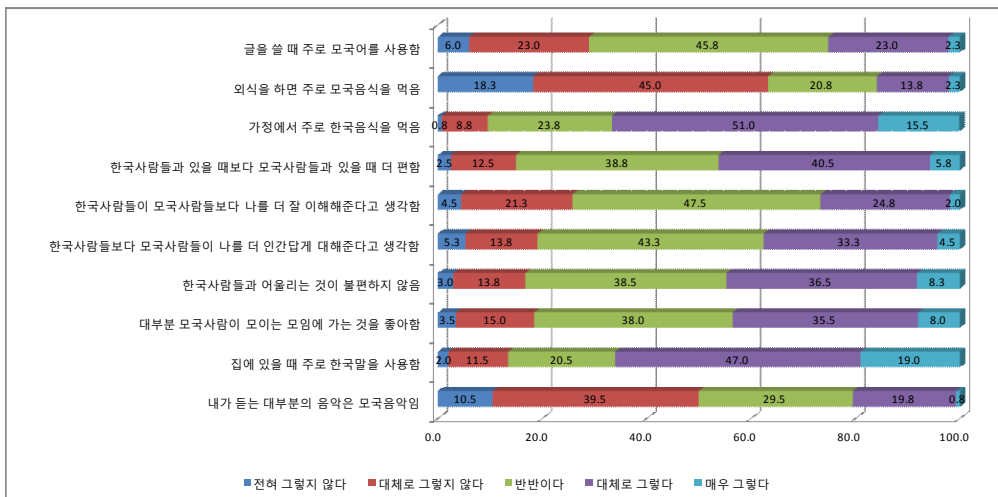
-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6).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의 문화적응 노력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13-6. 문화적응 노력 평균 점수 비교



□ 문화적응 정도

그림 13-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정도



- 10개 문항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척도(5점 만점)의 평균 점수는 2.93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13-7).

<	:	H ()	>
○ H씨(40세)는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남편(50세)과의 사이에 3녀(초등학생)를 두고 있다. 남편이 한국농업경영인협회 활동에 참가하면서 같이 부부동반으로 자주 참가하였고, 그러면서 농가주부모임 활동을 더불어 하였다. ○ H씨는 한여농, 농가주부모임 등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세 차례 수상경력이 있다(2008년 한국여성농업인협회상 수상 포함). ○ 2008년에는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수여하는 희망가정상을 수상하여(비행기 여비를 포함하여 1천여 만 원을 상금으로 수상) 친정(필리핀)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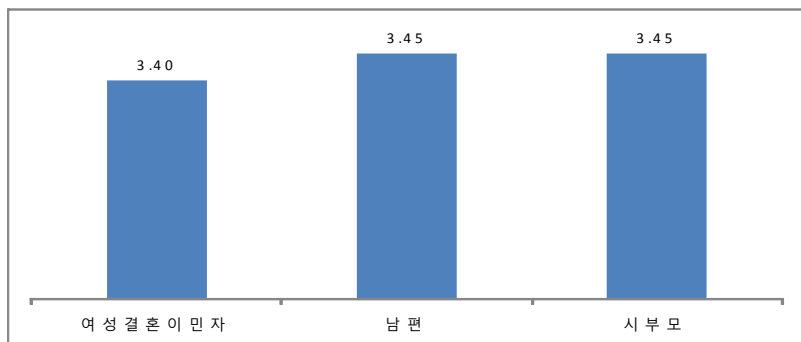
2.3. 심리적 적응

2.3.1. 심리적 안정

-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순이었다(그림 13-8).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에 심리적 안정 수준이 가장 높은 데 반해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2년 이하 시기)에 심리적 안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8. 심리적 안정 평균점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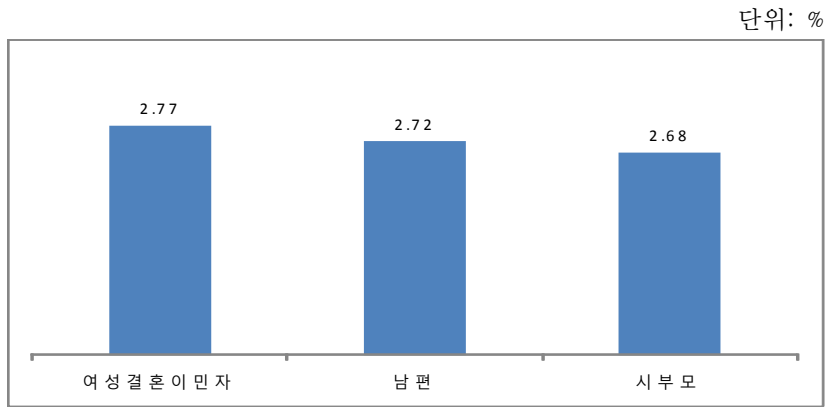
단위: %



2.3.2.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77점, 남편은 2.72점, 시부모는 2.68점이었다(그림 13-9).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2.82점)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가장 높은 데 반해서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2년 이하 시기)에 자아존중감 수준(2.80점 및 2.89점)이 가장 높았다.

그림 13-9. 자아존중감 평균점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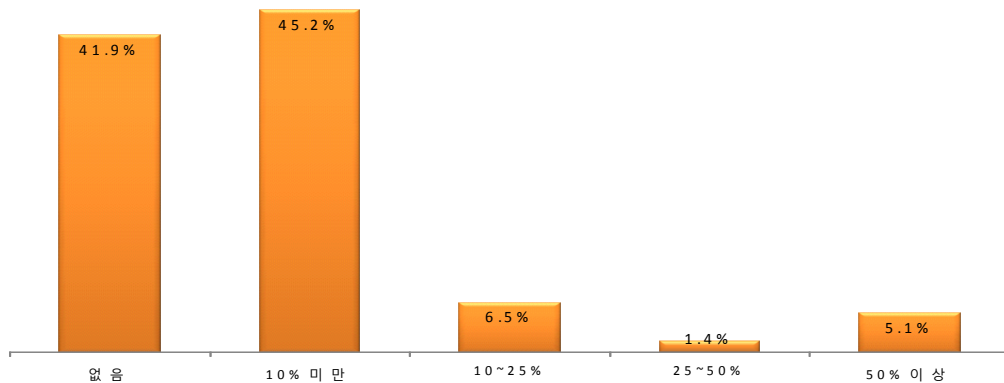
< : J () >

- J씨(26세)는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한 지 3년 5개월이 되었으며, 남편(38세)과의 사이에 2남(4세, 1세)을 두고 있다. J씨는 남편과 결혼해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한다. 남편은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며, 남편이 아니었으면 초기에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도망갔을 것이라고 하였다.
- J씨는 자신의 남편은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싸울 만한 부분이 있어도 덮어주는 성격이라고 하였다. 부부 간에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하기로 하면서는 책(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한국어와 태국어가 같이 되어 있음)을 함께 많이 보았다고 한다.
- 고민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로 시어머니나 남편과 상의하고 있다. J씨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으며 둘 간의 사이는 매우 친숙한 편이라고 한다. J씨는 남편이나 자녀와 관련된 고민들도 시어머니와 상의하고 있으며, 고민이 있을 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한국인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한다.

3.1. 다문화가족 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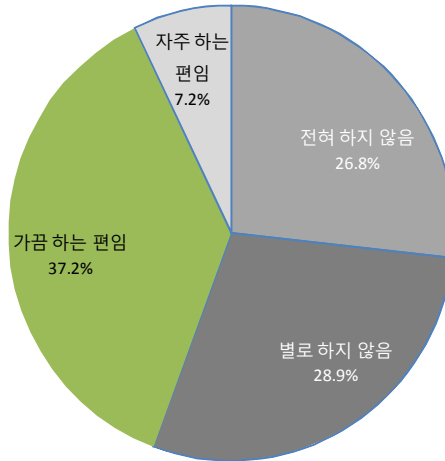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일상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어촌주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살고 있는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67.8%,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19.2%였다.
- 마을의 아이들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높지는 않았지만 일부 마을(5.1%)에서는 전체 아동의 50% 이상이 다문화가족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그림 13-10).

그림 13-10. 마을의 아동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율



- 농어촌주민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를 해본 사람(가끔 37.2%, 자주 7.2%)은 44.4%였고, 55.7%는 교류경험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그림 13-11).

그림 13-11.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교류 정도



3.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사회 기여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 정책 확대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 응답자 비율이 부정적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다(표 13-3).

표 13-3.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a		b
	3.29	0.62	67.0%
	2.61	0.56	84.4%
	3.51	0.57	80.0%
	3.53	0.50	84.2%

a: 5점은 긍정적 태도, 1점은 부정적 태도(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태도는 1점이 부정적 태도, 5점이 긍정적 태도)

b: 평균(3점) 이상자

4.1.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현황

4.1.1. 중앙정부 차원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 및 2011년도 시행계획

-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추진과제와 내용은 <표 13-4>와 같다.

표 13-4.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0 200 →’12 400) • (1 3) 1577-1366
	○ ○ ○ ○	· , () 15
	○ ○ ○ () ○	· , , ,

- 기본계획에 따라 '11년 3월에는 2011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에서는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정착 지원 및 ②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목표로, 5대 영역의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표 13-5>.

표 13-5. 2011년 시행계획 5대 영역별 중점 추진과제

5	(20)	()	'11 ()	(%)
	·	2		
		3	12,380 (13.9%)	14.1
		4	198 (0.2%)	
		5(3)	264 (0.3%)	1.8

		3	416	(0.5%)	
		2	940	(1.1%)	
		4	23,866	(26.8%)	
		6	3,072	(3.5%)	
		2			
		3	665	(0.7%)	
		3(1)	4,770	(5.4%)	
		3	995	(1.1%)	
		5	20,202	(22.7%)	
		3	5,868	(6.6%)	
		2	7,972	(9.0%)	
		2	761	(0.9%)	
		3	3,802	(4.3%)	
		2	1,040	(1.2%)	
		2	94	(0.1%)	
		2	1,634	(1.8%)	
		61(4)	88,939	(100%)	100

주: 1)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총 93,791백만 원 중 2011년 시행계획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예산 포함)

2) 열은 음영은 예산 비중이 5% 이상~10% 미만인 경우, 짙은 음영은 예산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1.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 계획(안)」 요약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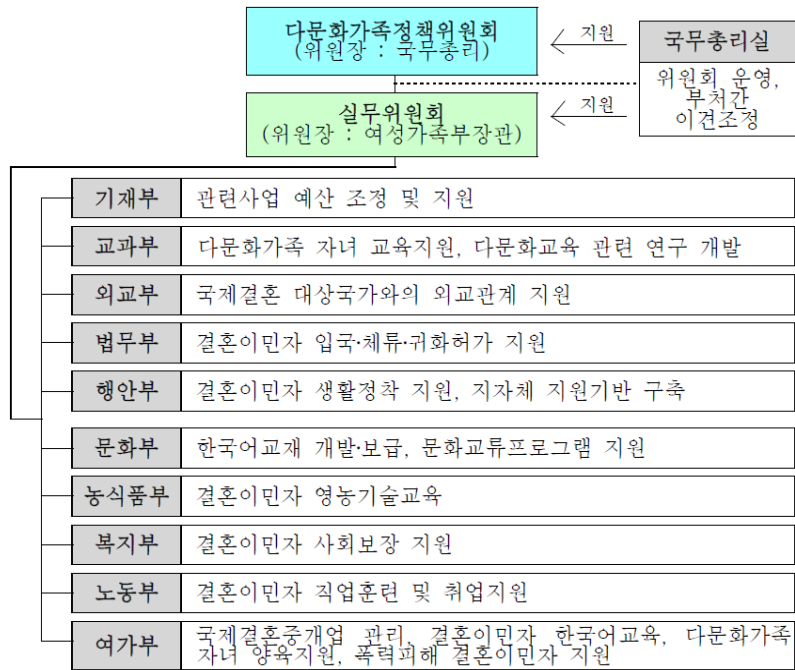
□ 정책 추진체계

- 총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8개 관련 부처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이 포함된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¹⁾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

1) 2009년 12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업들 간 조정 등의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²⁾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각 부처들은 담당 분야별로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그림 13-12>.

그림 13-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자료: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2010).

□ 부처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 여성가족부는 정책 총괄부처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 외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도 맡고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위원장)과 10개 부처 차관(위원)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2)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시 주관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다가(여가부의 정책 범위가 여성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관련 지원으로 한정), 2010년부터 다시 여성가족부가 주관 부처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 ()
		○ ()
		○
		▶
		○ 1:1
		○ EBS

표 13-7.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2008-2011)

단위: 백만 원

	2008	2009	2010	2011
	24,062 (73.9%)	29,551 (62.5%)	41,937 (66.7%)	55,524 (62.6%)
	1,530 (4.7%)	3,660 (7.7%)	4,670 (7.4%)	4,788 (5.4%)
	3,934 (12.1%)	6,500 (13.7%)	6,200 (9.9%)	6,300 (7.1%)
	-	52 (0.1%)	467 (0.7%)	-
	469 (1.4%)	2,429 (5.1%)	820 (1.3%)	1,360 (1.5%)
	2,586 (7.9%)	4,048 (8.6%)	5,644 (9.0%)	5,982 (6.7%)
	-	426 (0.9%)	1,176 (1.9%)	1,176 (1.3%)
	-	608 (1.3%)	2,000 (3.2%)	2,387 (2.7%)
	-	-	-	11,151 (12.6%)
	32,581	47,274	62,914	88,6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11.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886억 6천 8백만 원이다. 이 중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555억 2천 4백만 원(62.6%)으로 가장 높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111억 5천 1백만 원(12.6%)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 두 부처 예산의 합이 전체 예산의 약 75%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13-7).

4.1.2. 지방자치단체 차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 2011년 7월에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각종 사업들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³⁾ 동 계획에 따르면 16개 시도에서 5대 영역에 대하여 총 327개 사업에 6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이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3-8).

표 13-8.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 5대 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5			
	52	9,795	14.4%
	18	5	-
	139	24,983	36.6%
	69	29,850	43.8%
	49	3,575	5.2%
	327	68,208	100%

자료: 여성가족부, 2011.7. 「지방자치단체 2011년도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추진계획(종합)」.

-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계획에 따르면서,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5대 영역별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표 13-9>와 같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1.4.4. 공포, 10.5.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한 시도별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여성가족부에서 종합(2011년 5월)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심의(2011년 6월)를 거쳐 확정하였다.

표 13-9. 2011년 지자체 공통 및 특정 추진 사업

5		
	○ ○ ○ ○	○ ()
	○	○ ()
	○ ○ ○ ○ ○ ○ ○	○ 120 ○ () ○ () ○ () ○ () ○ () ○ ()
	○ ○ ○ ○	○ () ○ () ○ DMZ () ○ We Start ()
	○ ○ ○	○ (, , ,) ○ () ○ () ○ () ○ (, , ,)

□ 시·도교육청 지원 사업

-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되,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교사 및 일반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수행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교육체계 마련,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다문화이해 교육 및 연수, 다문화가족 학부모 지원,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있다<표 3-10>.

4.2. 현행 정책의 문제점

□ 유사 사업의 부처·기관별 분산 추진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여러 부처, 기관 등에서 통합 또는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그간 관련 부처 사업들 간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단순히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 동일한 수혜집단에 대해 상호 조율되지 못한 상태로 추진되다 보니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통합·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아직까지 조직체계나 실질적 조정 기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 배분체계 미 정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조직 등 관련 주체들 간 역할배분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겪는 경우가 나타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역할배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중앙단위와 지방단위에서 추진체계상 유사한 기능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 중앙정부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거시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과제들을 발굴·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설정하는 정책의 방향과 틀 하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적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그대로 따르거나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한편, 정책이 수요자(수혜자)와 만나는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민간조직 사업들 간에 서로 조정되지 못하고 중첩 추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령 도농복합시인 H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

문화가족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위의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아 농협 등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다문화가족이 도시지역(동부)에 거주하다 보니 민간조직이 사업의 편의성과 실적 등의 이유로 인원이 모이기 힘들고 이동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피하고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들이 중복 지원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부족

- 다문화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 주도로 인한 정책 획일성으로 소수집단 또는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 민간부문이 가진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세밀한 수요들을 찾아내고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책 제안자이자 전달자로서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 정책의 사각지대 상존

- 여러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의 사각지대는 제도적 여건 미흡으로 입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소재 등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여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경우(유형 1), 수요는 있으나 지리적·교통적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유형 2), 가족의 불허,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 개인적(혹은 가정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유형 3)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 1과 관련하여, 통합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기관별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는 사람만 온다'거나 '다문화 쇼핑객'으로 일컬어지듯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막고, 보다 넓은 범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 유형 2와 관련하여, 지리적·교통적 접근성 문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지원대상자들이 넓은 면적에 걸쳐 살고 있는 경우 서비스 중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먼 지역은 서비스가 닿지 못하거나, 상당히 제한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농복합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주로 도시지역에 입지(92%)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외곽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다.
- 유형 3 중에서도 특히 가족의 불화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외부활동이 제약받는 경우는 정책 대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 유형 중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각한 인권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적 지원창구 부재

- 지자체 단위에서도 통합적 정책 지원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원이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 입장에서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안내받을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제공의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 미흡

-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 활발히 발굴되지 못하고 지자체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소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유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지만,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것 외에 추가 사업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다수가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결혼 전 농사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아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충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가족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의 편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보면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족 통합’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거주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갈등 없이 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우리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농어촌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방안

5.1. 기본방향

- 첫째,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관련법들도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보다는 조금 특수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건강한 가족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 둘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 결혼 전 국적, 농어업 경험 등에 따라 경제 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 그리고 기타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통합적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수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부처별·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지역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이들 사업을 전체 풀(pool)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모든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2. 정책 개선방안

5.2.1. 단기적 정책과제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별, 품목별로 참여 및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농교육은 기초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 및 품목별로 영농교육 세분화, ②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③ 영농교육 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교통편·교통비 지원, ④ 교육 시기를 주로 농한기로 조정, ⑤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 강화, ⑥ 농기계·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강화

-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기본교육에 대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농어업 및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또는 부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던 한국어 교재들은 농어업 및 농어촌 관련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국어 교육의 관할권이 다른 부처로 이관된 이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재들을 보완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협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2011년 25개 지역농협에서 400명)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지역농협(농림수산식품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의 한국어교육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 또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다문화가족의 초·중등학생과 연결하여 학습 및 생활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게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대체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영농지원 대책은 현재 별로 없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족에게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농업 인력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농

기반이 취약하거나 규모화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농어촌공사의 지원을 통해 유희농지나 임대농지를 알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시 또는 농기계 작업 대행 시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등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에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2. 중·장기적 정책과제

□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현재 농어촌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시·군청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관련 기관이 있는 시·군청 소재지나 읍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소수의 전담인력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편 또는 교통요금 지원을 통해서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 승합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승합차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이 서비스 영역이나 대상 또는 지역 등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청이나 읍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시·군을 3~4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하의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농협 등을 활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면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회관, 학교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별 서비스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시도 및 시·군 단위로 구성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2011년 현재 다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은 총 21개 업체가 존재하고, 이 중 농어촌(군 및 도농복합시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기업 간의 협의체나 협력네트워크 구성 또는 다문화가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기업 간의 정보 교류, 역량 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기업 간의 협의체나 협력네트워크 구성은 분과별로 세분화하여 실제로 필요한 정보 공유, 제도개선 요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업종 중심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협의체 대표가 모여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body)이란 어떤 주체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특정 활동이나 기능을 운영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조직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여 아직까지 그 수가 미미한 농어촌 소재의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창업 관련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위한 멘토링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취업 및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식품 관련 직업 훈련 및 교육과 자녀돌봄 서비스를 반드시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 우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 본 연구의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특히, 가족·친척의 지지)와 본인 및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조모임이나 다문화봉사대의 결성 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통 소외계층이고 주변 도시의 지리에도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도우미, 통역도우미, 요양보호사, 요리사, 상담보조원 등과 같은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역량들을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재능기부운동’에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타

-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과 상호접촉이 많은 농어촌주민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을 통해서 일반 농어촌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교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주민과 다문화가족의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농어촌 지역 살리기를 위해 없어서 안 되는 귀중한 존재임을 농어촌주민들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리하여 현재 ‘가족 통합’이나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단위 또는 ‘부부’, ‘남편’, ‘자녀’ 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